

계약업체 아닌 다른 업체가 콘크리트 타설...위장시공 사실로

‘화정 아이파크 붕괴’ 부실·변칙 관행이 빚은 참사

경찰 수사서 확인...계약 맺은 전문업체가 장비임대업체에 하도급 줘 ‘물량떼기’ 통한 하도급으로 단가 깎이며 콘크리트 재료 질 보장 못해 6~10일만에 한 개 층 타설 ‘지나치게 빠른 속도’...동바리 제거도 문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애초 계약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떠넘겨져 ‘위장 시공’ 된 의혹(광주일보 1월 14일 6면 단독보도)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규모가 큰 콘크리트 타설 전문업체가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뒤 펌프카 장비를 갖춘 소규모 콘크리트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겨 공사가 이뤄졌다는 게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공사를 떠넘긴 업체나 하도급받은 업체 규모, 자금력 등이다. 원자재·공사 단가 깎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하도급 구조를 고려하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노동·건설업계 분석이 커지고 있다. 공기 단축, 수익 증대에 매몰,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업계의 부실·변칙 관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물량떼기’, 또 불법 하도급?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를 수사중인 광주경찰청 수사 본부는 16일 아이파크 39층에서 실시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대리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붕괴사고 관련 노동계 등에서 제기한 ‘물량떼기’ 등의 정황이 경찰 수사서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문건설업체인 A업체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골조공사 하도급을 맡겼는데, 실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A업체가 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B 펌프카 업체 직원들에 의해 ‘대리시공’ 됐다는 게 경찰 수사 내용이다. 노동계가 지적하는 ‘물량떼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물량떼기란 시공사와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업체 간 직접 계약이 아니라 시공사가 관련 업무를 골조공사업체에 넘기면 여기에서 펌프카 업체를 통해 레미콘을 공급받는 방식의 일종의 하도급 형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재 단가를 깎는 일이 생기고 결국 콘크리트 원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B 업체 대표가 펌프카 사업 뿐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A 업체에 비해 규모, 인원 등이 영세하다는 점에서 질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하도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건설 노동계 시각이다.

경찰도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A업체 외에 B 업체와 콘크리트 타설 계약을 맺었는지, A업체와 B 업체간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하도급 여부를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불법 하도급 여부와 관행적인 원자재 비용 따먹기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29조 2항)은 ‘전문건설을 맡은 업체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업종의 전문건설을 맡은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B업체 대표는 건설장비임대업체 뿐 아니라 같은 주소지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동일 업종인 A 업체와 B 업체 간 규모, 인원, 경력 등을 고려하면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원청사에서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에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고도 경고한 바 있다. 불법 하도급 적발을 우려한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아이파크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들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속도전 공사 정황도 속속, 뒤통수 맞았다=시공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신경을 썼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건설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현장사무소 등에서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는 지상 35층부터 39층 옥상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6일째인 16일 사고현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잔해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PIT) 층까지 5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한 사실이 담겨 있다.

타설일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타설한 10일 뒤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37층, 38층 바닥은 각각 7일과 6일 만에 타설됐고, 38층 천장(PIT층 바닥)은 8일 만에 타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측의 충분한 양생기간(12~18일 동안)을 거쳤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일주일 뒤엔 PIT층(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층) 벽체가 타설됐고, 11일 뒤 39층을 타설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통상 겨울철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는 기간이 3~4주(최대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주일에 아파트 한 개층이 올라간 사고현장의 건설 속도는 지나치게 빨랐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하중을 견디는 동바리(비계기둥) 등을 일찍 제거한 점도 공기 단축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 실리콘·스프링클러·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토록 하기 위해 무리하게 동바리 등을 서둘러 제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사고 20여일 전에 공기를 앞당기려고 203동 39층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 일부가 주저앉은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을 정의당 광주시당이 확보한 점도 시공사측의 속도전 정황의 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준산 건설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건설현장 내 부조리, 부당한 관행과 불법행위는 안전에 위협을 주고 공사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장실습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은(18)군(광주일보 2021년 10월 11일 6면) 사고와 관련, 검찰이 홍군에게 현장실습을 시켰던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업체 대표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전 9시 27분께 A씨 지시로 수영복에 잠깐만 착용하고 바다 속 1m까지 잠수, 요트(7t) 바닥에 붙은 파게비를 스크래퍼

로 긁어내는 작업을 지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작업 지시 과정에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고 이후 영업을 재개하려 했다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조활동 방해’ 호원 임직원들 혐의 일부 인정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 1차 협력업체 ㈜호원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노조활동 방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일부 임직원들은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하면서 법원은 항후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원 총괄사장, 생산관리팀장, 상무이사, 인사총무팀장, 차체반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노조측이 지난 2020년 1월 고발한 지 2년 만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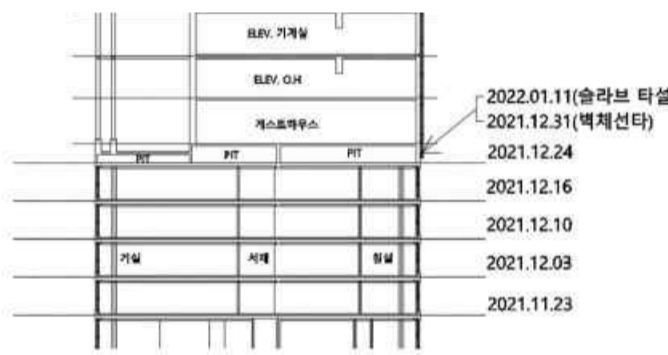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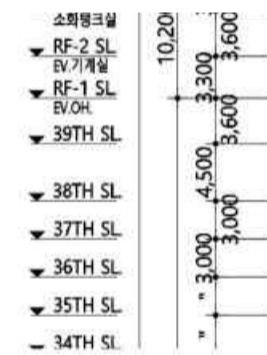
검찰은 호원측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호

원지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측 주도로 노조(호원노조)를 설립,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 개입했다고 봤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62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호원노조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해 그중 29명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 원서를 제출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호원의 총괄사장, 상무이사, 인사총무팀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6~10일 만에 타설을 인정했지만, 순차적 공모사실과 일부 전화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공사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생산관리팀장과 차체반원은 검찰의 공사사실을 부인했다. 다음재판은 3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설노조가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사무소 등에서 확보한 콘크리트 타설 일지 일부.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필요한 겨울철에도 6~10일 만에 아파트 한 개 층이 타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